

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	2011. 8. 9	조례 제1167호
일부개정	2012. 12. 11	조례 제1264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3. 1. 8	조례 제1268호
일부개정	2013. 3. 6	조례 제127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3. 11. 1	조례 제1329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4. 10. 6	조례 제1386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5. 1. 9	조례 제1421호(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)
일부개정	2016. 5. 27	조례 제1577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7. 5. 4	조례 제165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7. 10. 2	조례 제171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8. 9. 28	조례 제1856호
일부개정	2018. 10. 16	조례 제1870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22. 4. 13	조례 제2286호(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용인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유망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 1. 8, 2018. 9. 28>

1. 삭제 <2018. 9. 28>
2. “외국인투자기업”이란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체를 말한다.
3. “산업단지”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.
- 3의2. “준산업단지”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말한다.
- 3의3. “공업지역”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.
4. “개별입지”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.

5. “투자비”란 부지매입비와 시설투자비를 말한다.
6. “시설투자비”란 건축비, 물품을 제조·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를 말한다.
7. “상시고용인원”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(다만,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다)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.
 - 가.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
 - 나. 「국민연금법」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(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)의 납부가 증명된 자
 - 다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에 따른 보험료(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)의 납부가 증명된 자

제2장 기업유치위원회

제3조(기업유치위원회의 설치)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2018. 9. 28, 2022. 4. 13>

1.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
2. 사안별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
3.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
4.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

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3. 1. 8, 2013. 3. 6, 2013. 11. 1, 2014. 10. 6, 2016. 5. 27, 2017. 5. 4, 2017. 10. 2, 2018. 9. 28>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투자산업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<개정 2018. 9. 28, 2018. 10. 16>

1. 재정국장, 도시정책실장, 교통건설국장, 상수도사업소장, 하수도사업소장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

가.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명

나.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·단체의 임직원

다.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법률, 회계분야 등의 전문가

③ 위촉직 위원 중 용인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의원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9. 28>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. <신설 2018. 9. 28>

제6조 삭제 <2018. 9. 28>

제7조(회의) ①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,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보안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9. 28>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8. 9. 28>

③ 삭제 <2018. 9. 28>

제8조 삭제 <2018. 9. 28>

제9조 삭제 <2018. 9. 28>

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18. 9. 28>

제3장 산업단지 및 기업의 지원 <개정 2013. 1. 8>

제11조(대규모 투자기업) ① 시장은 국내 기업 중 대규모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입지지원, 시설투자비, 고용보조금,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투자비가 3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.
2. 개별입지 기업은 투자비가 2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소요되는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계상한다.

제12조(입지보조금 지원) ① 시장은 시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지 내 공장부지 매입대금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분할납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「용인시 공영개발사업용지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

③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이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산업단지의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및 개별입지를 위해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입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부지매입금액이 1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2. 개별입지 기업의 부지매입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3조(시설투자비 지원)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시설투자비가 1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2. 개별입지 기업의 시설투자비가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,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고용보조금 지원)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의 최소 이상의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2억원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2. 개별입지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2억원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해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때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에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,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15조(교육훈련보조금 지원)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의 최소 이상의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2억원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2. 개별입지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2억원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시장에게

신청하여야 한다.

제16조(특별지원금 보조) ① 시장은 대규모 투자기업 중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다.

1.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비가 1,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: 30억원 이내
2. 개별입지 기업의 투자비가 7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: 20억원 이내

제17조 삭제 <2018. 9. 28>

제18조(지원금 지급시기) 시장은 제11조의 대규모 투자기업의 지원금 신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.

1. 입지보조금은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.
2. 시설투자비는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사업개시일 이후에 지급하고,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준공된 날 이후에 지급한다.
3.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각각에 대한 지출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.

제19조(지원신청) 기업이 제12조, 제13조, 제14조 및 제15조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요청액 등
2. 공장부지매입과 관련된 근거서류 등
3. 투자 이행 각서
4. 기타 관계공무원이 요청한 서류 등

제20조 삭제 <2018. 9. 28>

제21조(대규모 투자기업의 지원제외대상) 유치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도축업(도축가공 제외), 레미콘, 아스콘, 아스팔트, 벽돌, 블록, 시멘트, 콘크리트관, 플라스틱제품, 담배 제·건조업, 재생재료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, 또한 경제적 효과가 적은 업종 및 환경오염이 많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[제목개정 2013. 1. 8]

제21조의2(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) ① 시장은 기업유치 활성화와 기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.

②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.

1. 중앙정부,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거나 용인시 산업평화대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
2. 그 밖에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필요하다고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

③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중소기업특례보증 및 이자보전 우선 지원
2.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시책이나 사업 참여시 우대
3.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
4. 관내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
5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

④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1. 산업재해,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
2.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
3. 기업의 업종이 변경되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
4. 그 밖에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[본조신설 2013. 1. 8]

제4장 보칙

제22조(중복지원의 금지)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중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

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항목의 보조금 등은 이를 중복 지원해서는 아니 된다.

제23조 삭제 <2018. 9. 28>

제24조(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) ① 삭제 <2018. 9. 28>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,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
1. 삭제 <2018. 9. 28>
2. 토지분양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을 때
3.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한 후 10년 이내에 처분할 때(다만, 동일목적의 사업을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)
4.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
5.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·폐업을 할 때
6.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
7. 삭제 <2018. 9. 28>
8. 삭제 <2018. 9. 28>
- ③ 삭제 <2018. 9. 28>

제25조 삭제 <2018. 9. 28>

제25조의2(기업유치 포상) ① 시장은 국내·외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의 경우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 여부는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하되, 민간인은 1건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공무원의 경우 1건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[본조신설 2013. 1. 8]

제25조의3(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입주기업 지원) 시장은 산업단지(준산업단지) 및 공업지역으로 입주하는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

행정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3. 1. 8]

제25조의4(민간전문가 활용) 시장은 기업유치위원회 외에 기업 및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전문가와 전문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9. 28>

[본조신설 2013. 1. 8]

제2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. 9. 28>

부칙

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 12. 11 조례 제1264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. 1. 1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를 인용한 조항은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.
별표 생략.

부칙 <2013. 1. 8 조례 제126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3. 3. 6 조례 제127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⑨ 까지 생략

⑩ 「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경제환경국장”을 “산업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⑪ 부터 ⑮ 까지 생략

부칙 <2013. 11. 1 조례 제1329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. 12. 12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「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④ 부터 ⑧ 까지 생략

부칙 <2014. 10. 6 조례 제1386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「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안전행정국장,산업환경국장,도시주택국장,건설교통국장,상하수도사업소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, 도시주택국장, 안전건설국장, 상하수도사업소장”으로 한다.

④ 부터 ⑬ 까지 생략

부칙 <2015. 1. 9 조례 제1421호,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⑦ 까지 생략

⑧ 「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 중 “「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⑨ 부터 ⑳ 까지 생략

부칙 <2016. 5. 27 조례 제1577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⑤ 「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상하수도사업소장”을 “상수도사업소장, 하수도사업소장”으로 한다.

⑥ 및 ⑦ 생략

부칙 <2017. 5. 4 조례 제165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⑤ 「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도시주택국장”을 “도시균형발전국장”으로 한다.

⑥ 부터 ⑫ 까지 생략

부칙 <2017. 10. 2 조례 제171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⑰ 까지 생략

⑱ 「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부시장”을 “제1부시장”으로, 제1호 중 “도시균형발전국장”을 “도시균형발전실장”으로 한다.

⑲ 부터 ⑧③ 까지 생략

부칙 <2018. 9. 28 조례 제185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10. 16 조례 제1870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⑪ 까지 생략

⑫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기획재정국장, 도시균형발전실장, 안전건설국장”을 “재정국장, 도시정책실장, 교통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2022. 4. 13 조례 제2286호,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